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87-101015-01

제5
판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별책]



질병관리청



제5
판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별책]



질병관리청

목 차
Contents

5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별책]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1. 법정감염병 검사 가능 기관 및 부서 연락처	1
2. 법정감염병 확인진단을 위한 검체 안내	10
3. 감염성물질 안전포장 방법	93

2)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부서별 담당업무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032-740-2705, 2737, 2744, 2754, 2759, 2585~2589 (FAX: 032-740-2725)	- 검역감염병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 조사 - 검역구역 내 감염병 병원체 오염여부 확인 및 검사 - 역학조사를 위한 진단검사 - 감염병 고위험군에 관한 진단검사 - 민간 감염병 검사기관의 진단검사에 관한 기술지도 및 조정
	진단분석과	042-257-9434~9443 (FAX: 042-257-9444)	- 검역감염병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 검역구역 내 병원체 및 매개체 조사·감시 - 검역구역 내 감염병 병원체 오염여부 확인 및 검사 - 권역 내 검사기관의 진단검사에 관한 기술지도 및 조정 - 권역 내 감염병 집단발생 검사대응 및 지원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062-221-4140~4149 (FAX: 062-221-4119)	- 검역감염병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 조사 - 검역구역 내 감염병 병원체 오염여부 확인 및 검사 - 역학조사를 위한 진단검사 및 감염병 고위험군에 관한 진단검사 - 민간 감염병 검사기관의 진단검사에 관한 기술지도 및 조정
	제주출장소	064-749-9705, 9707 (FAX: 064-749-9980)	검역감염병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053-628-0641~0645 (FAX: 053-628-0647)	- 검역감염병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 조사 - 검역구역 내 감염병 병원체 오염여부 확인 및 검사 - 역학조사를 위한 진단검사 및 감염병 고위험군에 관한 진단검사
	진단분석과	051-602-0671~6 (FAX: 051-260-3704)	- 검역감염병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 조사 - 검역구역 내 감염병 병원체 오염여부 확인 및 검사 - 역학조사 및 감염병 고위험군에 관한 진단검사 - 민간 감염병 검사기관의 진단검사에 관한 기술지도 및 조정

3)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행정구역 별 소재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부서별 담당업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세균검사팀	02-570-3415~6, 3419, 3449, 3460~1, 3340, 3105, 3408, 3417 (FAX: 02-570-3418)	수인성세균(식중독균 포함), 레지오넬라균, 항생제내성균, 호흡기세균, 인수공통질환, 잠복결핵
	바이러스검사팀	02-570-3425~3426, 3428~3429, 3455, 3458, 3499 (FAX: 02-570-3275)	일본뇌염, 진드기매개뇌염,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신증후출혈열 등 신경계, 식중독바이러스, A형/C형 간염, 수두, 엔테로바이러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
	면역진단팀	02-570-3427, 3451~3452, 3453, 3454, 3457, 3490, 3495, 3462 (FAX: 02-570-3456)	후천성면역결핍증, 진드기매개질환(쯔쯔기무시증 등), 모기매개질환(말라리아), 라임병, 규열, 발진열
	신종감염병 검사팀	02-570-3420~2, 3424, 3070~4, 3491~2	생물테러 병원체 검사(탄저, 페스트, 아토, 두창, 유비저 등), 코로나19, 메르스, 엠볼스,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 마버그, 라싸), MMR검사,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망
	감염병조사팀	051-309-2810~7 (FAX: 051-309-2819)	후천성면역결핍증, 코로나19, 수인성바이러스(식중독 포함), 고위험병원체(메르스, 엠볼스 등), 모기·진드기 매개 바이러스성 감염병, A형/C형/E형 간염, MMR, 병원체 감시사업 (호흡기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바이러스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하수기반 감염병,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진지기, 모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팀	051-309-2804, 2820~2826 (FAX: 051-309-2829)	수인성세균(식중독균 포함), 레지오넬라균, 항생제내성균, 잠복결핵, 모기매개질환(말라리아), 진드기매개질환(쯔쯔기무시증 등), 인수공통감염병(브루셀라, 규열), 호흡기세균, 생물테러 병원체 검사, 고위험병원체(페스트, 유비저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감시(세균, 원충), 생물안전3등급실험실 운영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부서별 담당업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	053-760-1450~1455, 1458 (FAX: 053-760-1459)	모기매개감염병, 설치류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C형간염, 모기 및 진드기 감시
	수인성질환과	053-760-1250~1254, 1256, 1258 (FAX: 053-760-1257)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세균, 바이러스, 원충), 항생제 내성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Enter-Net), 엔테로바이러스, A형/E형 간염, 하수기반 감시
	신종감염병과	053-760-1380~1386 (FAX: 053-760-1388)	코로나19, 호흡기바이러스, 엡폭스, 생물테러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잠복결핵, 호흡기세균, 환경수계 레지오넬라 검사, 수두, 하수기반 감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신종감염병과	032-440-5431~8 (FAX: 032-440-8797)	고위험병원체(메르스, 엡폭스 등), 코로나19,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K-RISS),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 (Enter-Net),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생물테러대응 및 병원체 감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감시, 기관 생물안전관리
	질병조사과	032-440-7981~7 (FAX: 032-440-8797)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잠복결핵, 항생제내성균, 호흡기세균, 엔테로바이러스 감시, 비브리오패염증 감시, C형간염, 수두, MMR감사, 인수공통질환
	매개체감염병과	032-440-5441~7 (FAX: 032-440-8797)	모기매개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등), 진드기매개감염병(쯔쯔가무시증 등), 설치류매개감염병(신증후군출혈열),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말라리아 감시사업
	식중독예방과	032-440-7971~6 (FAX: 032-440-8797)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식중독균 포함), A형/E형 간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감염병조사과	062-613-7630~7635, 7506~7507 (FAX: 062-613-7509)	고위험 바이러스성출혈열, 생물테러병원체, 엡폭스,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C형간염, 설치류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모기 매개 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신종감염병과	062-613-6960~6967 (FAX: 062-613-7509)	메르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호흡기세균, 잠복결핵, 환경수계 레지오넬라 오염도 조사, 하수 기반 감염병감시
	수인성질환과	062-613-7540~7546 (FAX: 062-613-7549)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세균, 바이러스, 원충, 흡충류), 의료관련감염병, A형/E형 간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부서별 담당업무
대전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질병조사과	042-270-6770~4, 6776 (FAX: 042-270-6749)	• 코로나19, 고위험병원체, 메르스, 생물테러병원체, 잠복결핵, 호흡기바이러스, 호흡기세균(백일해, 성홍열), 레지오넬라증, 었팍스, 수두
	감염병검사와	042-270-6704~6709 (FAX: 042-270-6749)	• 후천성면역결핍증, C형간염, 매독, 모기매개감염병, 설치류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내성균,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미생물과	042-270-6780~6787 (FAX: 042-270-6749)	• 수인성 세균 및 바이러스(식중독 포함),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 수인성 원충, A형/E형 간염
울산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질병조사과	052-229-4690~8, 4683~7 (FAX: 052-229-4699)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사업(KESS), A형/E형 간염, 수두, 수인성 세균, 바이러스 및 원충(식중독 포함), 고위험병원체, 인수공통질환, 모기매개질환, 쉐프가무시증, 항생제 내성균 • 코로나19, 호흡기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사업(KINRESS),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잠복결핵, 진드기매개질환(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호흡기세균(백일해, 성홍열, 레지오넬라), 레지오넬라(환경)
	감염병조사팀	031-8008-9700~9706, 9719 (FAX: 031-8008-9709)	• MMR, 수두, 일본뇌염, 진드기매개뇌염, 모기매개바이러스, 말라리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수인성질환팀	031-8008-9710~9716, 9736 (FAX: 031-8008-9708)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식중독검사(세균, 바이러스, 원충), 항생제내성균(CRE/VRSA), A형/E형 간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
	면역진단팀	031-8008-9720~9726 (FAX: 031-8008-9708)	• 진드기 및 설치류매개감염병(쉐프가무시증, 발진열, 렘토스피라증, 라임병, SFTS, 신증후군출혈열), 호흡기세균, 인수공통감염병, C형간염, 잠복결핵, 레지오넬라균, 엔테로바이러스 감시
	신종감염병팀	031-8008-9730~9735 (FAX: 031-8008-9707)	• 코로나19, 메르스, 었팍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호흡기바이러스, 구위험병원체(탄저, 야토, 페스트, 유버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사업, 생물테러 감염병 감시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부서별 담당업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	미생물검사팀	031-8030-5921~5926 (FAX: 031-8030-5919)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식중독검사(세균), 호흡기세균, 레지오넬라균, 항생제내성균(CRE/VRSA), 진드기 및 설치류매개감염병(프프가무시증, 발진열, 렘토스피라증, 라임병), 인수공통감염병, 매독, 잠복결핵,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세균)
	감염병조사팀	031-8030-5791~5794, 5763, 5768 (FAX: 031-8030-5919)	코로나19, 메르스, 엡폭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식중독검사(바이러스, 원충), 매개체전파 바이러스, 진드기 및 설치류매개질환(SFTS, 신증후군출혈열), A형/C형/E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MMR, 수두, 말라리아, 호흡기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감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바이러스, 원충),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사업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과	044-301-4520~4530 (FAX: 044-301-4519)	코로나19, 수인성 세균(식중독균 포함) 및 바이러스, 레지오넬라증, 호흡기세균, 호흡기바이러스, 매개체전파세균, 매개체전파바이러스, 항생제내성균, 인수공통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C형간염, 잠복결핵,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KINRESS),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 A형/E형 간염, 수두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감염병대응과	033-248-6411, 6490, 249-4555~7, 4579 (FAX: 033-248-6501)	코로나19, 메르스, 엡폭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호흡기세균(백일해, 성홍열), 수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생물테러병원체, 레지오넬라균(인제, 환경),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성출혈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등),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질병조사과	033-248-6417~20, 6479 (FAX: 033-248-6501)	기후변화매개체 감시, 일본뇌염 예측조사, 말라리아 감시사업, 모기매개감염병,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질환과	033-248-6421~2, 6424, 6492~3 (FAX: 033-248-650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집단발생 포함), 잠복결핵감염, 의료관련감염병, 후천성면역 결핍증, 매독, A형/C형/E형간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 (Enter-Net),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사업(KESS)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부서별 담당업무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	감염병진단과	033-649-8622~5 (FAX: 033-649-8619)	• 코로나19, 잠복결핵, 수두, 메르스,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수인성세균(식중독균 포함) 및 바이러스, 수인성 원충질환,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레지오넬라균(환경) 및 병원성 비브리오균(환경) 감시사업
	미생물과	043-220-5921~8 (FAX: 043-220-5929)	•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질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 호흡기세균(백일해, 성홍열), 레지오넬라균(인체, 환경), 항생제내성균, A형/E형 간염
	질병조사과	043-220-5931~5 (FAX: 043-220-5939)	• 잠복결핵, 기후변화매개체 감시, 후천성면역결핍증, 인수공통질환, • 진드기매개질환, 모기매개질환, C형 간염, 수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검사와	043-220-5941~6 (FAX: 043-220-5949)	• 코로나19,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사업(K-RISS), 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고위험병원체, 생물테러병원체, 엡폭스, MMR, 엔테로바이러스 감시,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KOWAS)
	감염병검사팀	041-635-6820~5, 6828~9 (FAX: 041-635-7941)	• 수인성 세균 및 바이러스, 수인성 원충,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 항생제내성균, 후천성면역결핍증, 잠복결핵,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사업(KESS), A형/C형/E형 간염, 수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종질환감사팀	041-635-6940~3, 6946~7, (FAX: 041-635-7941)	• 코로나19,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사업(K-RISS), 호흡기세균 및 바이러스, 생물테러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KOWAS)
	질병조사팀	041-635-6960~7 (FAX: 041-635-7941)	•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질환, 모기매개바이러스, 말라리아, 인수공통감염병, 환경수계레지오넬라균, 비브리오 유행예측 사업, 일본노역 매개모기 감시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부서별 담당업무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진단과	063-290-5330, 5332~4, 5287~8, 5316, 5295, 5338, 5348 (FAX: 063-290-5229)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세균, 바이러스, 원충),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 호흡기세균(레지오넬라균, 백일해 등), 잠복결핵, 진드기 및 설치류매개질환, 인수공통질환, 항생제내성균, 수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A형/C형/E형 간염, MMR, 생물테러병원체
	신종감염병과	063-290-5630~6, 5327, 5347, 5302 (FAX: 063-290-5719)	신종감염병(코로나19 등), 해외유입감염병(헝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MERS 등),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하수감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병 감시, 엔테로바이러스감염병 감시, 생물테러감염병 감시,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 조사, 감염병 매개체(모기, 진드기, 설치류) 조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미생물과	061-240-5210~5 (FAX: 061-240-5220)	수인성세균(식중독균 포함) 및 바이러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감시, 병원성비브리오균 감시, 잠복결핵, 항생제내성균, 호흡기세균,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A형/C형/E형 간염, 인수공통질환(브루셀라증), 레지오넬라균(환경)
	감염병조사1과	061-240-5230~6 (FAX: 061-240-5240)	신종감염병(코로나19, 메르스 등), 해외유입감염병(헝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기후변화매개체 감시, 일본뇌염 예측조사, 모기매개질환, 진드기매개질환,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 병원체 감시, 인수공통세균(Q열), 수두, MMR, 생물테러감염병 감시, 하수 감염병 감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	감염병조사2과	061-720-1660~8 (FAX: 061-720-1669)	수인성 세균(식중독균 포함) 및 바이러스, 수인성원충, 병원성비브리오균, 잠복결핵, 진드기 매개질환(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모기 매개질환 (헝거열, 일본뇌염 등), MMR, 신종 및 고위험병원체,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레지오넬라증, 하수기반 감염병감시, 호흡기세균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부서별 담당업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	054-339-8230~4 (FAX: 054-339-8239)	• 레지오넬라(환경), 진드기매개질한, 호흡기세균, 항생제내성균(CRE), 인수공통질한, 원충질한(말라리아)
	수인성 질환과	054-339-8130~4 (FAX: 054-339-8139)	• 수인성세균(식중독균 포함), 수인성원충, 수인성바이러스 검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
	바이러스분석과	054-339-8240~4 (FAX: 054-339-8249)	• 모기매개바이러스, 진드기매개바이러스, 호흡기바이러스, 후천성면역결핍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시, A형/C형/E형 간염, 수두
	감염병진단팀	055-254-2242~8 (FAX: 055-254-2249)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세균, 바이러스, 원충),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생제내성균(CRE), A형/C형/E형 간염, 모기매개질한, 인수공통질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 엔테로바이러스 감시, 일본뇌염 등 매개모기 감시, 해양환경 내 비브리오패균속 감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팀	055-254-2252~8 (FAX: 055-254-2249)	• 코로나19, 엡폭스, 결핵, 잠복결핵, 수두, 호흡기세균(레지오넬라증, 백일해 등), 호흡기바이러스(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진드기·설치류매개감염병(중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 등), 생물테러병원체,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 감시(K-RISS), 인체교상 및 환경 내 진드기 감시사업,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레지오넬라균(환경)
	식중독감시팀	055-254-2262~8 (FAX: 055-254-2249)	• 수인성·식품매개성(식중독) 세균, 바이러스 및 원충감사
	감염병검사과	064-710-6941~7, 6948~9 (FAX: 064-710-7549)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 감시(K-RISS),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KOWAS), 엔테로바이러스 감시(KESS),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모기· 진드기 매개질한(벡기열, 일본뇌염 등), 일본뇌염 유행 예측 조사, 고위험병원체, 인수공통 질환(Q열 등), 호흡기바이러스(메르스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C형간염, 잠복결핵, MMR, 수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	064-710-6951~5, 6958 (FAX: 064-710-7549)	• 수인성세균(식중독 세균) 및 바이러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 (Enter-Net),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 항생제내성균, 호흡기세균, A형/E형 간염

2. 법정감염병 확인진단을 위한 검체 안내

❖ 다음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검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우선 의뢰하여야 함

※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9호) 제5조제2항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찰 사·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1) 제1급 법정감염병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1급-1	에볼라 바이러스병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질병관리청, [유행 시,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보환연(서울, 부산, 광주, 강원, 경남, 제주)]	혈액 (각 4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및 혈청 분리용기	의심 시	4℃
					체액 (타액 1 mL 이상, 소변 15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4℃
제1급-2	마버그열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질병관리청, [유행 시,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보환연(서울, 부산, 광주, 강원, 경남, 제주)]	혈액 (각 4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및 혈청 분리용기	의심 시	4℃
					체액 (타액 1 mL 이상, 소변 15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4℃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1급-3	리싸열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질병관리청, [유행 시,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보환연(서울, 부산, 광주, 강원, 경남, 제주)]	혈액 (각 4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및 혈청 분리용기	의심 시	4 °C
					체액 (타액 1 mL 이상, 소변 15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4 °C
제1급-4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질병관리청, [유행 시,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보환연(서울, 부산, 광주, 강원, 경남, 제주)]	혈액 (각 4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및 혈청 분리용기	의심 시	4 °C
					체액 (타액 1 mL 이상, 소변 15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4 °C
제1급-5	남아메리카출혈열 (아르헨티나출혈열, 볼리비아출혈열, 베네수엘라출혈열, 브라질출혈열)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질병관리청	혈액 (각 4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및 혈청 분리용기	의심 시	4 °C
					체액 (타액 1 mL 이상, 소변 15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4 °C
제1급-6	리프트밸리열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질병관리청, [유행 시,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보환연(서울, 부산, 광주, 강원, 경남, 제주)]	혈액 (각 4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및 혈청 분리용기	의심 시	4 °C
					체액 (타액 1 mL 이상, 소변 15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4 °C

요염증감각단위3 제

요염증감각단위2 제

요염증감각단위1 제

요염증감각단위0 제

기타 발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1급-7	두창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PCR	질병관리청, [유행 시,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서울, 부산, 광주, 강원, 경남, 제주)]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최소 48시간 이내)	4 °C
					피부병변조직, 피부병변액, 가피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APS) 처리용기	의심 시	
제1급-8	페스트	배양검사	분리동정, Real-time PCR 등	질병관리청, [유행 시,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강원동부, 전남동부 제외)]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상온 (단, 수송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8°C 유지)
					기관지세척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림프절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제1급-9	탄저	배양검사	분리동정, Real-time PCR 등	질병관리청, [유행 시, 광역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강원동부 제외)]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APS) 처리용기	의심 시	상온 (단, 수송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8°C 유지)
					수포도말 (적정량)	무균용기	의심 시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1급-10	보툴리눔독소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Real-time PCR 등	질병관리청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4 °C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대변 (10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구토물 (2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위흡인물 (2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혈액 (20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의심 시	
	보툴리눔독소증	독소검출 검사	마우스독소 중화시험법	질병관리청	대변 (10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4 °C
					구토물 (2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위흡인물 (2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무균용기	의심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1급-11	아토피병	배양검사	분리동정, Real-time PCR 등	질병관리청, [유행 시, 권역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강원동부 제외)]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SPS) 처리용기	증상 의심 시	상온 (단, 수송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8℃ 유지)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의심 시	
					기관지세척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의심 시	
					림프절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의심 시	
					조직 (2 g 이상)	무균용기*	증상 의심 시	
* 무균 용기 채취 시 24시간 이내 운송이 어려운 경우 세균용 수송배지에 접종 권장								
제1급-12	신종감염병 증후군	미정	미정	질병관리청	※ 검체(종류, 수량 등) 및 상황에 따라 검사 방법 조정			
제1급-13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유행 시,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구인두도말 (1개 이상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상온 (단, 수송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8℃ 유지)
					비인두도말 (1개 이상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비인두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기관지폐포세척액 (2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1급-14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4 °C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비인두흡인물 (3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비강흡인물 (1개의 도말물)	무균용기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가래 (3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기관흡인물 (3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제1급-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배양검사	배양,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기관지폐포세척액 (3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4 °C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비인두흡인물 (2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기관지흡인물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기관지폐포세척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안점막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항체검출검사	MNT 등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 회복기(2차): 급성기 검체 채취일로부터 2~4주 이후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비인두흡인물 (2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1급-16	신종인플루엔자	배양검사	배양,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4 °C
					기관지흡인물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기관지폐포세척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비인두흡인물 (2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기관지흡인물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기관지폐포세척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기관지폐포세척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항체검출검사	MNT 등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 회복기(2차): 급성기 검체채취일 로부터 2-4주 이후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비인두흡인물 (2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기관지흡인물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기관지폐포세척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항생제 투여 전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항생제 투여 전	
							4 ℃	
제1급-17	디프테리아	배양검사	분리동정, Real-time PCR	질병관리청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PCR	질병관리청 [유행 시,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포함)]	비강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항생제 투여 전	2~8℃
					위막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항생제 투여 전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항생제 투여 전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항생제 투여 전	
					비강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항생제 투여 전	
					위막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항생제 투여 전	
					인후도말 (1개 이상의 도말물)	바이러스 수송배지	증상발현 후	
제1급-18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질병관리청	비강 및 비인두 흡인물 (2 mL 이상)	무균용기		2~8℃
					피취수액 (1ml 이상)			
					소변 (10ml 이상)			

2) 제2급 법정감염병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2급-1	결핵	현미경검사	형광염색법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경남)	가래 (3 mL 이상, 최소 2개)	무균용기	1차: 즉시 2, 3차: 아침 기상 후 즉시 채취	4 °C
					기관지세척액 (3 mL 이상, 최소 2개)	무균용기	필요 시	
					체액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가래 (3 mL 이상, 최소 2개)	무균용기	1차: 즉시 2, 3차: 아침 기상 후 즉시 채취	
		배양검사	분리동정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경남)	기관지세척액 (3 mL 이상, 최소 2개)	무균용기	필요 시	4 °C
					체액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2급-2		유전자검출 검사	PCR, Xpert, MTB/RIF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경남)	가래 (3 mL 이상, 최소 2개)	무균용기	1차: 즉시 2, 3차: 아침 기상 후 즉시 채취	4 °C
					기관지세척액 (3 mL 이상, 최소 2개)	무균용기	필요 시	
					체액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수포액 (적정량)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수두	배양검사	배양, Real-time PCR 등	가피 (적정량)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4 °C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항체검출검사	ELISA 등	질병관리청	뇌척수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혈액* (IgM)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등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혈액* (IgG)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등	- 급성기(1차):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 회복기(2차): 급성기 검체 채취일로부터 2-4주 이후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수도권, 호남권, 제주출장소, 경남권), 보건환경연구원	수포액 (적정량)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가피 (적정량)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시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뇌척수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7일 이내)	
* 항체검출검사는 혈청과 혈장 모두 사용 가능								
제2급-3	홍역	배양검사	배양,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비강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4 °C
					구인두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비인두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혈액 ¹ (5 mL 이상, 영유아 1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3일 이내 적정)	
					소변 ^{1, 2} (10 mL 이상)	무균용기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항체검출검사	ELISA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IGM)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등	발진 발생 28일 이내 (발진 발생 4-11 이내 적정)	

[제2급]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IgG)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등	- 급성기(1차): 발진 발생 즉시(발진 발생 7일 이내 적정) - 회복기(2차): 급성기 검체 채취일로부터 10~21일	
					비강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구인두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비인두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혈액 ¹ (5 mL 이상, 영유아 1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3일 이내 적정)	
					소변 ^{1, 2} (10 mL 이상)	무균용기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1. 최대 14일까지 검체 채취 가능
2. 24시간 이내 운송이 어려운 경우 1,500rpm 5-10분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수송배지에 풀어준 후 -70℃에 보관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2급-4	콜레라	배양검사	분리동정, 혈청형 확인, PCR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구토물 (2 g 이상)	무균용기	발병 초기	
					순수배양 균주	고체배지		
제2급-5	장티푸스	배양검사	분리동정, 혈청형 확인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제2급]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2급-6	파라티푸스	배양검사	분리동정, 혈청형확인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소변 (5 mL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담즙, 골수* (1 mL 이상)	혈액배양 용기	의심 시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 만성보균자의 경우 1개월 간격으로 검체 채취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소변 (5 mL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 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2급-7	세균성이질	배양검사	분리동정, 혈청형확인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담즙, 골수* (1 mL 이상)	혈액배양 용기	의심 시	실온
					혈액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제2급-8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혈청형확인, PCR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채취 가능하나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 만성보균자의 경우 1개월 간격으로 검체 채취

[제2급]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2급-9	A형간염	항체검출검사	EIA 등	-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발병 후 최대 6주 이내	4 °C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발병 후 최대 6주 이내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발병 후 최대 6주 이내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발병 후 최대 6주 이내	
* 혈청 검체가 추천되지만 혈장 검체도 가능하며, 혈액은 채취 후 즉시 원심분리하여 냉장보관(단, 원심분리 시 용혈주의)								
제2급-10	백일해	배양검사	분리동정, PCR, Real-time PCR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전남동부 제외)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2주 이내	상온 (수송시간이 48시간 이상 소요 될 경우 2~8 °C 보관 수송)
					비인두흡인물 (2 mL 이상)	수송배지	증상 발생 3주 이내	상온 (수송시간이 48시간 이상 소요 될 경우 2~8 °C 보관)
					가래 (3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2주 이내	
		유전자검출 검사	PCR, Real-time PCR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전남동부 제외)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2주 이내	상온 (수송시간이 48시간 이상 소요 될 경우 2~8 °C 보관)
			비인두흡인물 (2 mL 이상)	수송배지	증상 발생 3주 이내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기래 (3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2주 이내	수송)
		* 검체 채취 시 일반면봉이나 calcium alginate swab은 PCR 반응을 저해하므로 권장하지 않음						
제2급-11	유행성이하 선염	배양검사	배양, Real 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타액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증상 발생 3일 이내 적정)	4 °C
					볼점막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증상 발생 3일 이내 적정)	
					구인두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증상 발생 3일 이내 적정)	
					비인두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증상 발생 3일 이내 적정)	
					혈액 ¹ (5 mL 이상, 영유아 1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증상 발생 3일 이내 적정)	
					소변 ^{1,2} (10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증상 발생 3일 이내 적정)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뇌수막염이 있는 동안	
		항체검출검사	ELISA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IgM) (5 mL 이상, 영유아 1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등	증상 발생 3일 이후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 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수도권, 호남권, 제주출장소)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IgG) (5 mL 이상, 영유아 1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등	- 급성기(1차): 증상 발생 3일 이내 - 회복기(2차): 급성기 검체 채취일로부터 2주 뒤	
					타액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증상 발생 3일 이내 적정)	
					불점막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증상 발생 3일 이내 적정)	
					구인두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증상 발생 3일 이내 적정)	
					비인두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증상 발생 3일 이내 적정)	
					혈액 ¹ (5 mL 이상, 영유아 1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증상 발생 3일 이내 적정)	
					소변 ^{1,2} (10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증상 발생 3일 이내 적정)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뇌수막염이 있는 동안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2급-12	풍진 (선천성)	배양검사	배양,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비강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출생 후 3개월 이내	4 °C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출생 후 3개월 이내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출생 후 3개월 이내	
					혈액 (1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 용기	출생 후 3개월 이내	
					소변 (10 mL 이상)	무균용기	출생 후 3개월 이내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출생 후 3개월 이내	
					혈액(IGM) (1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등	출생 이후 (출생 후 3-6개월 이내 적정)	
					혈액(IGG) (1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등	출생 후 9개월 이후 ²	
		항체검출검사	ELISA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1. 최대 14일까지 검체 채취 가능

2. 고환염 증상 시 채취 권고함; 24시간 이내 운송이 어려운 경우 1,500rpm 5-10분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수송배지에
풀어준 후 -70 °C에 보관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유전자검출 검사 ¹⁾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비강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출생 후 3개월 이내	4 °C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출생 후 3개월 이내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출생 후 3개월 이내					
					혈액 (1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 용기	출생 후 3개월 이내					
					소변 (10 mL 이상)	무균용기	출생 후 3개월 이내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출생 후 3개월 이내					
					1. 1개월 간격으로 검체 채취하여 바이러스 검출 모니터링 필요 2. MMR 예방접종 전							
					풍진 (후천성)	배양검사	배양,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비강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구인두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비인두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시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검출 검사	항체검출검사	ELISA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1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 용기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3일 이내 적정)	채취 후 보관 온도
						소변 ^{1,2} (10 mL 이상)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뇌척수액 ¹ (5 mL 이상)	뇌수막염이 있는 동안	
						혈액(IgM) (1 mL 이상)	발진 발생 28일 이내 (발진 발생 5일 이후 적정)	
						혈액(IgG) (1 mL 이상)	• 급성기(1차): 발진 발생 즉시(발진 발생 7일 이내 적정) • 회복기(2차): 급성기 검체 채취일로부터 10-21일	
	유전자검출 검사	항체검출검사	ELISA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비강도말 ¹ (1개의 도말물) 구인두도말 ¹ (1개의 도말물) 비인두도말 ¹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채취 후 보관 온도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수송배지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제2급]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2급-13	폴리오	배양검사	분리	질병관리청	혈액 ¹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 용기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3일 이내 적정)	4 °C	
					소변 ^{1,2} (10 mL 이상)	무균용기	발진 발생 즉시 (발진 발생 5일 이내 적정)		
					뇌척수액 ¹ (5 mL 이상)	무균용기	뇌수막염이 있는 동안		
					1. 발진 발생일로부터 최대 14일까지 검체 채취 가능				
					2. 24시간 이내 운송이 어려운 경우 1,500rpm 5-10분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수송배지에 풀어준 후 - 70 °C에 보관				
					대변 (3 g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후 14일 이내에 24-48시간 간격으로 2회 채취	4 °C	
					뇌척수액 (2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후 14일 이내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후 14일 이내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후 14일 이내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 용기	증상 발생 후 14일 이내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2급-14	수막구균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질병관리청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상온 (수송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 될 경우 2~8℃ 보관 수송)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처리 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 SPS(Sodium Polyanetholsulfonate) 항응고제가 처리된 용기 제외 (특히, 자동화 혈액배양 액체배지에는 SPS 항응고제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불가능)			
제2급-15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배양검사	분리동정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균혈증, 뇌수막염 등 의심 시(항균제 투여 전)	상온 (수송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 될 경우 2~8℃ 보관 수송)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균혈증, 뇌수막염 등 의심 시(항균제 투여 전)	
					관절액 (1 mL 이상)	무균용기	항균제 투여 전	
					늑막액 (1 mL 이상)	무균용기	항균제 투여 전	
					심낭액 (1 mL 이상)	무균용기	항균제 투여 전	
					복수 (1 mL 이상)	무균용기	항균제 투여 전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2급-16	폐렴구균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질병관리청	생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상온 (수송시간이 24시간 이상 소요 될 경우 2~8 ℃ 보관 수송)	
					혈액 (5 mL 이상, 2개 이상)*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항균제 투여 전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항균제 투여 전		
					관절액 (1 mL 이상)	무균용기	항균제 투여 전		
					늑막액 (1 mL 이상)	무균용기	항균제 투여 전		
					심낭액 (1 mL 이상)	무균용기	항균제 투여 전		
					복수 (1 mL 이상)	무균용기	항균제 투여 전		
					생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 호기성 및 혐기성 시험을 위해 각 한 병씩 필요				
제2급-17	한센병	현미경검사	피부도말검사, 조직검사	한국한센학회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의심 시	4 ℃	
					피부병변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의심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2급-18	성홍열	유전자검출 검사	PCR	한국한센복지협회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의심 시	4 °C
					피부병변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의심 시	
		배양검사	분리동정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전남동부 제외)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4 °C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제2급-19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항생제감수성 시험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전남동부 제외)	혈액 (10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의심 시	4 °C
					비강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의심 시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의심 시	
					소변 (1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피부병변 (적정량)	무균용기	의심 시	
					순수배양 균주	※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시 순수배양 균주 송부		

[제2급]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2급-20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목 (CRE)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항생제감수성 시험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 (10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의심 시	4 °C
					비강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의심 시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의심 시	
					소변 (1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피부병변 (적정량)	무균용기	의심 시	
					순수배양 균주	※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시 순수배양 균주 송부		
제2급-21	E형간염	항체검출검사	EIA 등	-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발병 후 최대 6주 이내	4 °C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RT - PCR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발병 후 최대 6주 이내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발병 후 최대 6주 이내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발병 후 최대 6주 이내	
					* 혈청 검체가 추천되지만, 혈장 검체도 가능하며, 혈액은 채취 후 즉시 원심분리하여 냉장 보관 (단, 원심분리 시 용혈 주의)			

3) 제3급 범정가여병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시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1	파상풍	임상소견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상처부위에서 파상균이 분리될 확률은 30 % 이하이며, 통상적으로 실험실진단은 하지 않음						
제3급-2	B형간염	항원/항체 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EIA, CLIA 등	-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발병 후 가능한 빨리 채취*	4 ℃
* 급성 B형간염으로 의심되어 IgM anti-HBc 검사하였으나 음성인 경우 2-4주 후 재검 필요								
제3급-3	일본뇌염	배양검사	배양, Real - time RT - PCR	질병관리청 지역질병대응센터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4 ℃
		항체검출검사	IFA, PRNT 등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항체검출검사	IF, PRNT 등	질병관리청 지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뇌 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시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4	C형간염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RT - PCR 등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4 °C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RT - PCR	-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의심 시*	
* HCV 감염 접촉자의 경우, HCV 항체검출검사 결과 음성이면 4-6주 후에 HCV 유전자검출검사 시행 (단, 신생아감염(수직감염)의 경우, 생후 1개월 이후 HCV 유전자검출검사 시행)								
제3급-5	말라리아	현미경 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남)	혈액 (3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의심 시 (가능한 발열이 있는 동안)	4 °C
		유전자검출 검사	PCR, LAMP 등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혈액 (3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의심 시 (가능한 발열이 있는 동안)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보건환경연구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전남동부, 경북, 경남, 제주)				
					* 채취 후 즉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혈장과 혈구로 즉시 분리하며 냉장보관하여 7일 이내 운송			
제3급-6	레지오넬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경남권)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기관지세척액 (1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4 °C
					기관지폐포액 (1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기관지흡인물 (1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폐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홍수 (적정량)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7	비브리오패혈증	항원검출검사	UAT	-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4 °C
					소변 (1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발병 즉시 - 회복기(2차 혈청): 발병 후 6-12주 이내	
		유전자검출검사 (추정)	Real-time PCR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수도권, 충청권, 제주출장소, 경북권, 경남권)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4 °C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8	발진티푸스	배양검사	분리동정, IFA 또는 Real-time PCR 등	질병관리청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Cary Blair transport medium)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4℃
					구토물 (2 g 이상)	무균용기	발병 초기	
					수모액,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배양검사	분리동정, IFA 또는 Real-time PCR 등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피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발병 첫 주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후 2-4주 내	
		항체검출검사	IFA 등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EDTA 또는 Citrate)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PCR 등	필요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 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9	배양검사	배양검사	분리동정, IFA 또는 PCR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4 °C
					피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혈청): 발병 첫 주 - 회복기(2차혈청): 급성기 후 2-4주 내	
	발진열	항체검출검사	IFA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또는 Citrate)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피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또는 Citrate)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제3급-10	프프기무시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IFA 또는 PCR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또는 증상 발생 10일 이내)	4 °C
					가피 또는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11		항체검출검사	IFA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발병 첫 주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후 2-4주 이내	4 °C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또는 증상 발생 10일 이내)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PCR 등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가피 또는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또는 발병 7일 이내)	
	렙토스피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현미경관찰, PCR	질병관리청	소변 (5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또는 발병 10일 이후)	4 °C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또는 발병 4~10일 사이)	
					조직 (100 m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또는 발병 10일 이내)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항체검출검사	현미경 응집법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발병 첫 주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후 1-2주 이내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또는 발병 7일 이내)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PCR 등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소변 (5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또는 발병 10일 이후)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또는 발병 4~10일 사이)	
					조직 (100 m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또는 발병 10일 이내)	
					* 배양검사 시 Heparin, SPS 처리용기 사용, 유전자검출검사 시 EDTA 처리용기 사용			
제3급-12	브루셀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PCR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4 °C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13					골수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4℃			
					관절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조직 (100 mg 이상)	무균용기	수술 또는 부검 시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발병 첫 주, 항생제 투여 전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후 2주 이후				
	공수병	항체검출검사	미세응집법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전남동부 제외)	-	타액 (3mL 이상)	무균용기	최소 3~6시간 간격으로 채취			
						뇌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항원검출검사	IFA, IHA 등		목 피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일주일에 1~2번 채취				
		항체검출검사	RFFIT		질병관리청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 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14	신증후군출혈열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 - PCR 등	질병관리청	뇌척수액 (1mL 이상)	무균용기	일주일내 1-2번 채취	4 °C
					타액 (3mL 이상)	무균용기	최소 3-6시간 간격으로 채취	
					목 피부조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항체검출검사	ELISA, IFA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동부 제외)	혈액(1gM)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증상 발생 즉시 (발병 후 3-10일 이내 적정)	
					혈액(1gG)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증상 발생 즉시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검체 채취일 로부터 2-3주 이후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 - 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또는 항응고제	의심 시 (발병 5일 이내)	

* 최소 10개 이상의 모낭을 취해야 하며 모낭 기저 부위의 피부신경(5-6 mm)이 포함되어야 함

* 새해 18개월 미만의 수간영양사: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필수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소요 시 -20℃ 이하 냉동 보관 (검사일로 운송 시 4℃ 유지)
		항원검출검사	IHC, 웨스턴블롯	한림대학교 부검센터	조직** (뇌조직, 편도조직)	무균용기, 생검키트	의심 시	(IHC) 10% 중성 포르말린 고정 후 상온 보관 (웨스턴블롯) -70℃ 이하 냉동 보관 (검사일로 운송 시 드라이 아이스를 담은 박스에 담아 운송)
* 항응고제 처리 용기 중 ACD가 가장 적합 ** 조직검체를 이용한 진단검사용 생검키트 요청 시 한림대학교 부검센터(02-6923-8211)로 연락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17	황열	배양검사	배양,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발병 후 10일 이내 적정)	4℃
		항체검출검사	IFA, PRNT 등	질병관리청	혈액(IG)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증상 발생 즉시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검체 채취일 로부터 2-3주 이후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발병 후 10일 이내 적정)	
제3급-18	뎅기열	배양검사	배양,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발병 후 7일 이내 적정)	4℃
		항원검출검사	ELISA 등	-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발병 후 7일 이내 적정)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증상 발생 즉시 (발병 후 7일 이내 적정)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 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19	큐열	항체검출검사	IFA, PRNT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IgG)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증상 발생 즉시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검체 채취일 로부터 2-3주 이후	4 °C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필요 시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발병 후 7일 이내 적정)	
		배양검사	Conventional RT-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발병 후 7일 이내 적정)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항생제 투여 전)	
					부검 시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제3급-19	큐열	항체검출검사	IFA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전남동부 제외)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발병 첫 주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후 3-6주 이내	4 °C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20	웨스트나일열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PCR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항생제 투여 전)	4 ℃
		배양검사	배양,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항체검출검사	IFA, PRNT 등	질병관리청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혈액(IgG)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증상 발생 즉시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검체 채취일 로부터 2-3주 이후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21	라임병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 - 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4 °C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배양검사	분리동정, 현미경검사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증상 발생 10일 이내 (항생제 투여 전)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10일 이내 (항생제 투여 전)	
					피부생검조직 (직경 3~8 mm)	무균용기	필요 시	
		항체검출검사	IFA (또는 ELISA), 웨스턴블롯법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발병 첫 주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후 4주 이내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10일 이내 (항생제 투여 전)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시기관 (2026. 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22	진드기매개뇌염	배양검사	배양, Real - time RT - PCR 등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4℃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 급성기(1차 혈청): 증상 발생 즉시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검체 채취일 로부터 2-3주 이후	
		항체검출검사	IFA, PRNT 등	질병관리청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23	유비저	배양검사	분리동정, Real - time 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강원동부, 전남동부 제외)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SPS) 처리용기	의심 시	상온 (단, 수송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8℃ 유지)
					소변 (1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농양, 피부병변 (적정량)	무균용기	의심 시	
제3급-24	치루구니아열	배양검사	배양, Real - time RT - PCR 등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즉시	4℃
		항체검출검사	IFA, ELISA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IgM)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증상 발생 즉시 (발병 5일 이후 적정)	
				질병관리청	혈액(IgG)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증상 발생 즉시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검체 채취일 로부터 2-3주 이후	

기관 및 부서 연 락처

제 1 급 감염병

제 2 급 감염병

제 3 급 감염병

제 4 급 감염병

[제3급]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시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배양검사	배양, Real - time RT - PCR 등	질병관리청	혈액 (6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7일 이내	4 °C			
					소변 (3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4주 이내				
		항체검출검사	IFA, PRNT 등	질병관리청	혈액(IgG) (6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 혈청): 증상 발생 즉시 •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검체 채취일 로부터 2-3주 이후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RT - PCR 등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 (6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증상 발생 7일 이내
									소변 (3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4주 이내

*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는 혈액 1 mL 이상 채취하며, 혈액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소변으로만 검사 가능

*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는 혈액 1 mL 이상 채취하며, 혈액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소변으로만 검사 가능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27	엠폍스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PCR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피부병변액 (2부위 도말) ¹⁾	무균용기 또는 수송배지	의심 시(발진)	냉장 (4~8℃)	
					피부병변 조직 (적정량)				
				가피 (2부위) ²⁾					의심 시(전구기)
				구인두도말 (1개)					의심 시(발진/전구기)
				직장도말 (1개)					
					혈액 (5ml 이상)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³⁾	의심 시(전구기)		
1) 환부(2곳)를 별도로 소독하지 않으며, 멸균된 드라이 스왑*으로 채취하며 각각의 스왑(2개)을 각각 개별 무균용기** 또는 바이러스 수송배지(Virus transport medium, VTM)에 수집 * 스왑은 합성섬유(Sterile nylon, Polyester, Dacron 등) 재질만 사용 가능(cotton swab 사용 불가)(손잡이 재질은 무관하나 쉽게 휘어지는 것은 사용 불가) ** 각각의 2개의 스왑을 2개의 VTM 또는 무균용기 각각에 나눠 담아 수집 *** 피부병변액이 스왑에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환부를 강하게 문질러서 채취(불편감, 경미한 통증이 수반될 수 있음) 2) 환부(2곳)를 별도로 소독하지 않으며, 멸균된 무구포셋(blunt end) 등을 이용하여 탈피하여 채취하여 무균용기 또는 VTM에 수집 3) 헤퍼린 처리 용기는 PCR 반응을 저해할 수 있어 검체 부적합으로 검사수행 불가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 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3급-28	매독	현미경검사	현미경검사	-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 태반, 제대, 림프절, 제대혈(적정량)	무균용기	의심 시	실온
		항체검출검사	트레포네마 검사, 비트레포네마 검사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의심 시	4 °C
		유전자검출 검사	PCR	-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신경매독 의심 시	
					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 태반, 제대, 림프절, 제대혈(적정량)	무균용기	의심 시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4. 제4금 범정가여병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	인플루엔자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RT - PCR 등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2-3일 이내	4℃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2-3일 이내	
					비인두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2-3일 이내	
					비강흡입물 (1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2-3일 이내	
					기관지폐포 세척액(2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2-3일 이내)	
					가래* (1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2-3일 이내)	
* 가래: 상기도검체 채취가 불가능 할 경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채취								
제4급-2	회충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대변 (1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상시	실온 (장기 보관 시 4℃)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대변 (1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상시	실온 (장기 보관 시 4℃)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4	요충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전남동부, 경북, 제주, 세종, 경남)	항문주위 도말 (1개)	요충검사용 핀테이프	아침 기상 후 씻기 전	실온 (장기 보관 시 4℃)
제4급-5	긴흡충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광주, 대전, 강원, 전남, 전남동부, 경북, 경남)	대변 (1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상시	실온 (장기 보관 시 4℃)
제4급-6	폐흡충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광주, 대전, 강원, 전남, 전남동부, 경북, 경남)	대변 (1 g 이상) 가래 (1 mL 이상)	대변채취 용기 무균용기	의심 시 의심 시	실온 (장기 보관 시 4℃)
제4급-7	장흡충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광주, 대전, 강원, 전남, 전남동부, 경북, 경남)	대변 (1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상시	실온 (장기 보관 시 4℃)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8	수족구병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 - 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최대 30일)	4℃ (48시간 이후 -70℃)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혈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최대 2주까지)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최대 2주까지)	
					비강세척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최대 2주까지)	
					남성의 요도 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제4급-9	임질	현미경검사	그람염색	-	요도·자궁경부·직장 ·인두도말 중 택1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실온
		배양검사	-	-	결막 (적정량)	수송배지	필요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시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관절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요도·자궁경부·직장 ·인두도말 중 택1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첫 소변 (10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항원검출검사	ELISA 등		-	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관절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남성의 요도 도말·자 궁경부·질 도말 중 택1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첫 소변 (10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유전자검출 검사	PCR 등		-				

기관 및 부서 연락처

제 1 급 감염병

제 2 급 감염병

제 3 급 감염병

제 4 급 감염병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2 성기단순포진		배양검사	배양, PCR	-	변변의 분비물 (적정량)	수송배지 (Amies 또는 Thioglycollate Hemin - based)	의심 시 (궤양 확인 즉시)	4 °C
					궤양부위 삼출물 (적정량)	수송배지 (Amies 또는 Thioglycollate Hemin - based)	의심 시 (궤양 확인 즉시)	
					수포액(삼출액) (주사기 흡인 또는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병변 관찰 시	
					궤양부위 분비물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병변 관찰 시	
		항체검출검사	EIA 등	-	궤양부위 도말 (적정량)	무균용기	병변 관찰 시	
					혈액 (5 mL 이상)	무균용기	병변 관찰 시	
					수포액(삼출액) (주사기 흡인 또는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병변 관찰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3	침구콘딜롬	유전자검출 검사	PCR	-	궤양부위 분비물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병변 관찰 시		
					궤양부위 도말 (적정량)	무균용기	병변 관찰 시		
					혈액 (5 mL 이상)	무균용기	병변 관찰 시		
					수포액(삼출액) (주사기 흡인 또는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병변 관찰 시		
					궤양부위 분비물*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병변 관찰 시		
					궤양부위 도말 (적정량)	무균용기	병변 관찰 시		
		* Calcium Aluminate 면봉 사용은 제외							
		유전자검출 검사	PCR, DNA Microarray 등	-	병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병변 관찰 시	상온 (고정액 보관 등)	
					자궁경부세포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병변 관찰 시	4 °C	
					* 채취용 술을 상하 좌우 문지르고 360도 회전 3번하여 채취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4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항생제 감수성시험, PCR	질병관리청	혈액 (10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의심 시	4 °C
					소변 (1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순수배양 균주	※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시 순수배양 균주 송부		
제4급-15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항생제 감수성시험, PCR	질병관리청	혈액 (10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의심 시	4 °C
					소변 (1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순수배양 균주	※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시 순수배양 균주 송부		
제4급-16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항생제 감수성시험	질병관리청	혈액 (10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의심 시	4 °C
					소변 (1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순수배양 균주	※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시 순수배양 균주 송부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7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항생제 감수성시험	질병관리청	혈액 (10 mL 이상)	항응고제 (Heparin, SPS) 처리용기	의심 시	4 °C
					소변 (10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순수배양 균주	※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시 순수배양 균주 송부		
정관감염증								
제4급-18								
제4급-18-가	살모넬라균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혈청형확인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제4급-18-나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PCR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8-다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배양검사	분리동정, PCR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제4급-18-라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EIEC)	배양검사	분리동정, PCR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8-마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배양검사	분리동정, PCR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제4급-18-바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PCR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Wang's Transport Medium (Semisolid), STARA Transport Media (Semisolid) 등)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제4급]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8-사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PCR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구토물 (2g 이상)	무균용기	발병 초기	4 °C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구토물 (2g 이상)	무균용기	발병 초기	
제4급-18-아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PCR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구토물 (2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구토물 (2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기관 및 부서 연·관처 제 1급 감염병 제 2급 감염병 제 3급 감염병 제 4급 감염병

[제4급]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8-가 모노아티페네스 감염증	리스테리아	배양검사	분리동정, PCR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제4급-18-다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항원검출검사	EIA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유전자검출 검사	RT - 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8-파	아스트로 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RT - 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제4급-18-하	장내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증	항원검출검사	EIA 등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8-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제4급-18-너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RT - 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g 이상)	무균용기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4 °C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설사가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발생 직후 (항생제 투여 전) 채취 권고	
제4급-18-더	이질아메바 감염증	항원검출검사	ELISA	질병관리청	대변 (2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의심 시	4 °C
					장생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유전자검출검사	PCR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의심 시	
					장생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제4급-18-러	람블편모충 감염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대변 (2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의심 시	4 °C
					장내흡인물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유전자검출 검사	PCR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의심 시	
					대변 (2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의심 시	
		항원검출검사	DFA, IFA 등	질병관리청	장내흡인물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8-머	작은외포자충 감염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대변 (2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의심 시	4 °C
					장생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유전자검출 검사	PCR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의심 시	
					장생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항원검출검사	DFA, IFA 등	질병관리청	대변 (2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의심 시	
					장생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제4급-18-버	원포자충 감염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대변 (2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의심 시	4 °C
					장생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유전자검출 검사	PCR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대변 (2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의심 시	
					장생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대변 (2 g 이상)	대변채취 용기	의심 시	
					장생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급성호흡기감염증								
제4급-19-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4 °C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비강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비인두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기관지폐포세척액 (2 mL 이상)	무균용기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 가래: 상기도검체 채취가 불가능 할 경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채취			
제4급-19-나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4 °C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9-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비강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비인두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기관지폐포세척액 (2 mL 이상)	무균용기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 가래: 상기도검체 채취가 불가능 할 경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채취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비강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비인두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기관지폐포세척액 (2 mL 이상)	무균용기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 가래: 상기도검체 채취가 불가능 할 경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채취						
제4급-19-라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4 ℃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비강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비인두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기관지폐포세척액 (2 mL 이상)	무균용기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 가래: 상기도검체 채취가 불가능 할 경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채취						
제4급-19-마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4 ℃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9-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4 °C				
						비강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비인두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기관지폐포세척액 (2 mL 이상)	무균용기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 가래: 상기도검체 채취가 불가능 할 경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채취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비강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비인두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9-사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지폐포세척액 (2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4 °C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제4급-19-사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Real - 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비강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4 °C
					비인두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기관지폐포세척액 (2 mL 이상)	무균용기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 가래: 상기도검체 채취가 불가능 할 경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채취

* 가래: 상기도검체 채취가 불가능 할 경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채취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9-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PCR	질병관리청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4 °C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비인두흡인물 (2 mL 이상)	무균용기		
	유전자검출 검사		PCR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 제외)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비인두흡인물 (2 mL 이상)	무균용기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19-자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배양 검사	분리동정	질병관리청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4 °C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비인두흡인물 (2 mL 이상)	무균용기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유전자검출 검사	PCR	질병관리청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비인두흡인물 (2 mL 이상)	무균용기		
					가래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제4급-20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혈액 (2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4 °C
					골수 (2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림프절 (1 g 이상)	무균용기	필요 시	
					피부조직 (1 g 이상)	무균용기	필요시	
제4급-20-가	리슈만편모충증	유전자검출 검사	PCR	질병관리청	혈액 (2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4 °C
					골수 (2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림프절 (1 g 이상)	무균용기	필요 시	
					피부조직 (1 g 이상)	무균용기	필요 시	
제4급-20-나	바베스열원충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혈액 (2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4 °C
		유전자검출 검사	PCR	질병관리청	혈액 (2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4 °C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20-다 아프리카수면병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혈액 (2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4 °C
					뇌척수액 (2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골수 (2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림프절 (1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피부병변조직 (1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유전자검출 검사		PCR 등	질병관리청	혈액 (2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4 °C
					뇌척수액 (2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골수 (2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림프절 (1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피부병변조직 (1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20-라	주혈흡충증	현미경검사	집란, 검경	질병관리청	대변 (1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4 °C
					소변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간·직장·방광점막 조직(1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제4급-20-마	사기스병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혈액 (2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 급성기: 증상 발생 2개월 이내 - 만성기: 증상 발생 2개월 이후	4 °C
					조직 (1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림프절 또는 골수 (2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제4급-20-바	광동주혈선충증	유전자검출 검사	PCR	질병관리청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4 °C
					혈액 (2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제4급-20-사	악구충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피하조직 등 (1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4 °C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20-아	사상충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기급적 밤 22시-02시 사이)	4℃
		유전자검출 검사	PCR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기급적 밤 22시-02시 사이)	
		* 미세사상충은 낮에는 정맥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므로 가급적 밤(22-2시 사이)에 혈액을 채취						
제4급-20-자	포충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	농종 (1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4℃
제4급-20-차	톡소포자충증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	혈액 (2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4℃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조직 (1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체검출검사	ELISA	질병관리청	혈액 (5 mL 이상)	혈청분리 용기	의심 시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PCR	질병관리청	혈액 (2 mL 이상)	항응고제 처리용기	의심 시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20-가	메디나충증	※ 메디나충증의 경우 임상증상 및 육안으로 총체 확인이 가능하며, 실험실 검사 불필요			조직 (1 g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제4급-21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동부제외)	대변 (2 g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최대 30일)	4℃ (48시간 이후 -70℃)
					직장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뇌척수액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혈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구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최대 2주까지)	
					비인두도말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최대 2주까지)	
					비강세척액 (5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직후부터 4일 이내 (최대 2주까지)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22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유전형검출 검사	PCR, DNA Microarray 등	-	병변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병변 관찰 시	상온 (고정액 보관 등)
				-	자궁경부세포 (2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병변 관찰 시	4 ℃
제4급-2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전자검출 검사	Real-time RT-PCR 등	질병관리청, 광역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구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2-3일 이내	4 ℃
					비인두도말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증상 발생 2-3일 이내	
					비인두흡인물 (1 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2-3일 이내	
					비강흡인물 (1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2-3일 이내	
					기관지폐포 세척액(2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2-3일 이내)	
					가래 (1mL 이상)	무균용기	증상 발생 즉시 (가능한 2-3일 이내)	
					* 가래: 상기도감체 채취가 불가능 할 경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채취			

분류	감염병명	검사법	세부검사법	검사기관 (2026.1월 기준)	검체 (최소량)	채취용기	검체 채취 시기	채취 후 보관 온도
제4급-24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배양검사	분리동정	질병관리청	혈액 (5mL 이상)	항응고제(SPS) 처리 용기	의심 시 (항진균제 투여 전)	4 °C
					보철수액 (1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진균제 투여 전)	
					녹막액 (1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진균제 투여 전)	
					복수액 (1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진균제 투여 전)	
					소변 (5mL 이상)	무균용기	의심 시 (항진균제 투여 전)	
					겨드랑이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의심 시	
					서혜부 (1개의 도말물)	수송배지	의심 시	

3. 감염성물질 안전포장 방법(2023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 발췌)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1) 생물학적 위해도에 따른 감염성물질 분류

❖ UN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의 위험물질 분류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성물질 수송가이드”의 생물학적 위해도에 따른 2가지 카테고리(카테고리 A와 B)에 따라 감염성물질을 분류

- 카테고리 A: 수송과정 중 포장 외부로 유출되어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영구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성 미생물 배양체 또는 검체
- 카테고리 B: 카테고리 A 범주에 속하지 않는 병원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성 미생물 배양체 또는 검체

※ 병원체(pathogens): 사람, 동물 및 식물 등의 생물체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기생충, 진균 및 프리온 등의 미생물(유전자 변형 미생물 포함)

※ 배양체(cultures): 병원체 증식을 목적으로 한 미생물 배양 결과물(검체는 미해당)

※ 검체(patient specimens): 질병 진단, 조사 및 질병 치료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직접 채취된 배설물, 분비물, 혈액과 그 구성분, 조직과 조직액, 인체 조직 일부 및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동물 조직 그리고 그 밖의 가검물 등

2) 감염성물질의 범주

❖ 카테고리 A의 범주

- 제4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및 검체(의심 검체 포함)
 - 제3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제2위험군 고위험병원체*의 배양체
- *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BSE, vCJD) 병원체는 검체(또는 의심검체) 포함

❖ 카테고리 B의 범주

- 제3위험군 병원체의 검체(의심검체 포함)
- 제2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및 검체(의심검체 포함)

❖ 카테고리 A와 B 예외 대상

- 병원체를 포함하는 물질이 중화되거나 불활화되어 더 이상 질병을 유발할 수 없는 물질

※ 제4위험군,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는 병원체를 불활화하여 비감염성물질로 수송하고자 하는 경우, 멸균이나 불활화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카테고리 B에 준하는 3중 안전 포장 작업을 수행

-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성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것
- 사람이나 동물에 비병원성인 미생물을 포함하는 물질
- 심각한 감염 유발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음식, 물 등의 환경시료
- 수혈용 혈액과 혈액 구성 요소
- 이식을 위한 조직 및 장기
- 흡습제에 채취된 건조 혈흔 및 배설물
- 오염원이 제거된 의료폐기물
- 병원체 함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적 소견이 있는 검체

※ 포르말린(30mL 이하)으로 고정시킨 조직 검체, 파라핀 고정 조직 검체, 고정시킨 세포 도말표본, 항체, 콜레스테롤, 글루코오스, 호르몬, 암진단, 신장 또는 간기능 검사 등 진단시험을 위한 혈액이나 소변 검체 등

3) 감염성물질의 표시 및 포장방법

❖ 카테고리 A의 감염성물질 포장

- UN 포장기준 P620을 준수한 3중 안전 포장을 수행해야 함

- ① 1차 용기: 감염성물질에 직접 닿는 용기로 방수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하며, 스크류 캡 등 마개로 밀봉하여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밀폐해야 함
- ② 2차 안전 수송용기: 2차 안전 수송용기는 1차 용기 보호 및 파손을 방지하고자 내구성이 뛰어나야하며, 방수 및 누수방지 용기(플라스틱, 철재 등)로 -40~+55℃ 범위 온도와 95kPa 이상의 압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안전성이 입증된 2차 용기를 사용해야 함
- ③ 3차 포장 용기(최종 외곽 포장 용기): 3차 포장 용기는 2차 안전 수송용기를 담는 최종 외곽 포장 용기로, 수송 중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1차와 2차 용기를 포함하여 UN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3차 포장 용기 제조 규격*(UN 표준마크)이 표기된 3차 포장 용기를 사용해야 함
- ④ 흡수제: 1차 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 사이에 포함되는 내용물로써 1차 용기 파손 시 감염성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함(예: 흡수용 패드, 흡수용 겔, 코튼볼 등)
- ⑤ 충격완화제: 1차 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 사이, 2차 안전 수송용기와 3차 포장 용기 사이의 공간에 채우는 내용물로써 수송 시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함(예: 에어비닐 등)

❖ 카테고리 A의 포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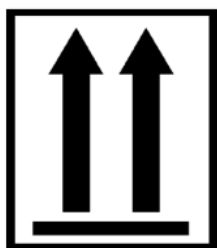
- 반드시 전용 수송용기를 사용하여 수송과정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염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3중 안전 포장

- ① 카테고리 A에 해당되는 감염성물질을 방수 및 누수방지가 되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 재질의 1차 용기에 넣는다.
※ 1차 용기에 포장 가능한 감염성물질의 최대 부피는 50mL, 최대 무게는 50g이다.
- ② 카테고리 A에 해당되는 감염성물질을 담은 후 즉시 1차 용기의 외부는 반드시 적절한 소독제(의료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 ③ 1차 용기는 충분한 양의 흡수제로 둘러 싸 후 1차 용기의 마개 부위가 위쪽을 향하도록 2차 안전 수송용기에 넣고 방수 및 누수방지를 위해 O-링이 포함된 스크류 캡 등 견고한 마개로 닫는다.
※ 1차 용기 내 감염성물질의 양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흡수제를 충분히 넣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④ 3차 포장 용기 안에 수송 중 외부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에어비닐 등 충격완화제를 넣고, 2차 안전 수송용기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 ⑤ 시험의뢰서 등 감염성물질 정보는 2차 안전 수송용기와 3차 포장 용기 사이에 넣는다. 필요한 경우 감염성물질의 내용 및 용량을 2차 안전수송용기 표면에 부착한다.
※ 3차 포장 용기(외곽 포장 용기)는 각 단면이 최소 10cm이상이어야 하며, 3중 안전 포장이 완료된 수송 용기는 최대 부피 4ℓ 또는 무게 4kg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최종 외곽 포장 용기에 직접 연락이 가능한 수신·발송자 기입과 24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사고 시 응급처리 연락처(119)를 기입하고, 감염성물질 마크(생물학적 위해 표시)와 방향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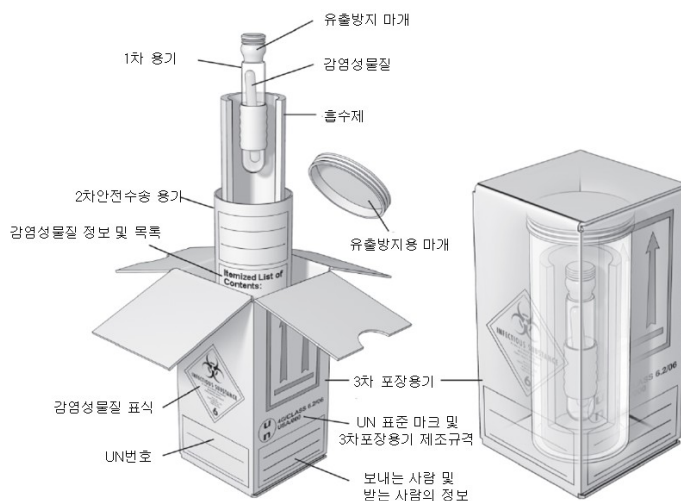
- 감염성물질(Class 6, Division 6.2)
- UN 번호 (카테고리 A):
 - UN 2814 (인체위해성 감염성물질)
 - UN 2900 (동물위해성 감염성물질)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 표시]



- 1차 용기 마개와 화살표의 방향이 동일하도록 방향 표시
- 3차 포장 용기의 각 옆면에 각 1개씩 부착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 방향 표시]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 포장 예시]

❖ 카테고리 B의 감염성물질 포장

- UN 포장기준 P650 준수한 3중 안전 포장(견고한 2차, 3차 포장 용기 사용)을 해야 함

- ① 1차 용기: 감염성물질에 직접 닿는 용기로 방수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하며, 스크류 캡 등 마개로 밀봉하여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밀폐해야 함
- ② 2차 안전 수송용기: 2차 안전 수송용기는 1차 용기 보호 및 파손을 방지하고자 내구성이 뛰어나야 하며, 수송과정에서 임의의 충격에 의한 파손과 압력변화를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견고해야하며, 방수 및 누수방지 용기(플라스틱, 철제 등)를 사용해야 함.
 ※ 액상의 감염성물질의 경우, 95kPa 이상의 압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항공으로 운송되는 액상의 감염성물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40 ~ +55℃ 범위 온도와 95kPa 이상의 압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함
- ③ 3차 포장 용기(최종 외곽 포장 용기): 2차 안전 수송용기를 담을 수 있는 최외곽 포장용기를 말하며 2차 안전 수송용기 또는 3차 포장용기는 수송 중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함
 ※ 항공으로 운송되는 감염성물질의 3차 포장용기는 반드시 내구성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해야 함
- ④ 흡수제: 1차 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 사이에 포함되는 내용물로서 1차 용기 파손 시 감염성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함(예: 흡수용 패드, 흡수용 겔, 코튼볼 등)
- ⑤ 충격완화제: 1차 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 사이, 2차 안전 수송용기와 3차 포장 용기 사이의 공간에 채우는 내용물로서 수송 시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함(예: 에어비닐 등)

❖ 카테고리 B의 포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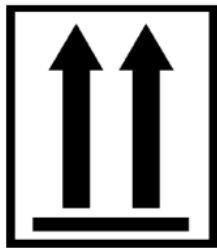
- 수송과정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3중 안전 포장

- ① 카테고리 B에 해당되는 감염성물질을 방수 및 누수방지가 되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 재질의 1차 용기에 넣는다.
 ※ 1차 용기에 포장 가능한 감염성물질의 1ℓ, 최대 무게는 1kg이다.
- ② 카테고리 B에 해당되는 감염성물질을 담은 후 즉시 1차 용기의 외부는 반드시 적절한 소독제(의료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 ③ 1차 용기는 충분한 양의 흡수제로 둘러 싸 후 1차 용기의 마개 부위가 위쪽을 향하도록 2차 안전 수송용기에 넣고 방수 및 누수방지를 위해 O-링이 포함된 스크류 캡 등 견고한 마개로 닫는다.
 ※ 1차 용기 내 감염성물질의 양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흡수제를 충분히 넣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④ 3차 포장 용기 안에 수송 중 외부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에어비닐 등 충격완화제를 넣고, 2차 안전 수송용기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 ⑤ 시험의뢰서 등 감염성물질 정보는 2차 안전 수송용기와 3차 포장 용기 사이에 넣는다. 필요한 경우 감염성물질의 내용 및 용량을 2차 안전수송용기 표면에 부착한다.
 ※ 3차 포장 용기(외곽 포장 용기)는 각 단면이 최소 10cm이상이어야 하며, 3중 안전 포장이 완료된 수송 용기는 최대 부피 20ℓ 또는 무게 20kg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최종 외곽 포장 용기에 직접 연락이 가능한 수신·발송자 기입과 24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감염성물질 마크(생물학적 위해 표시)와 방향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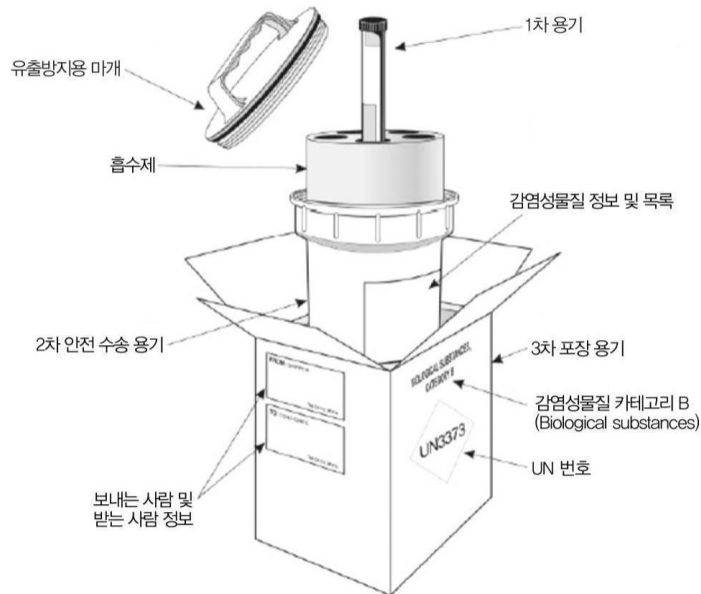
- 감염성물질(Class 6, Division 6.2)
- UN 번호: UN 3373(카테고리 B)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표시]



- 1차 용기 마개와 화살표의 방향이 동일하도록 방향 표시
- 3차 포장 용기의 각 옆면에 각 1개씩 부착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방향 표시]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포장 예시]

4) 감염성물질의 냉매 포장

❖ 감염성물질 냉매 포장

- 감염성물질 수송 중 저온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냉매(얼음, 아이스 팩,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
- 감염성물질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 포장을 수행하며, 2차 안전 수송용기를 완전히 밀폐시킨 후, 냉매제는 2차 안전 수송용기 외부(3차 포장 용기 내부) 또는 3차 포장 용기 외부 (외곽포장 내부)에 두어 포장

※ 냉매제로 얼음 또는 드라이아이스를 사용 시 냉매제가 녹아도 2차 안전 수송용기는 제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냉매제를 담은 용기는 수송 중에 냉매제로부터 발생하는 융해로부터 3차 포장 용기(최종 외곽 포장 용기)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방수가 되는 포장재여야 함(단, 드라이아이스를 냉매제로 사용시 기화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못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스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포장해야 함)

❖ 냉매제를 이용한 포장 방법

- 냉매제를 2차 안전 수송용기 외부(3차 포장 용기 내부)에 담는 경우

- ① 냉매제로부터 감염성물질이 직접 닿지 않도록 2차 안전 수송용기를 완전히 밀폐시킨다.
- ② 냉매제를 2차 안전 수송용기 외곽에 둘러싸며, 냉매제를 담은 용기 안에 2차 안전 수송용기가 수송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 ③ 냉매제 용기를 감염성물질 3차 포장 용기에 넣고, 시험의뢰서 등 감염성물질 정보는 냉매제 용기 외부에 넣는다.
- ④ 최종 외곽 포장 용기에 해당되는 표식을 부착하고, 표기 내용을 기입한다.

- 냉매제를 3차 포장 용기 외부(외곽포장 내부)에 담는 경우

- ① 냉매제를 3차 포장 용기의 외곽에 둘러싸며, 수송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냉매제 용기 안에 3차 포장 용기를 고정시킨다.
- ② 냉매제 용기를 감염성물질 표식 부착 및 표기 가능한 최종 외곽 포장 용기(4차)에 넣는다.
- ③ 최종 외곽 포장 용기에 감염성물질이 해당하는 표식을 부착하고, 표기 내용을 기입한다.
- ④ 최종 외곽 포장 용기에 직접 연락이 가능한 수신·발송자 기입과 24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드라이아이스 중량(무게)를 기재하고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 감염성물질 냉매 포장 표식 및 표기

- 감염성물질을 냉매 포장한 경우, 별도의 표식이나 표기기입 내용이 추가되지는 않지만 위험물 Class 9에 해당되는 ‘드라이아이스’를 냉매제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표기 및 표식 요건을 따라야 함



UN1845 DRY ICE
Net, Qty.: _____ kg



중량 : _____ kg

- 드라이아이스
- UN 번호: UN 1845

[감염성 물질 냉매 포장 표식 및 표기]

5) 감염성물질의 다중 포장 및 다수 포장

❖ 다중포장은 카테고리의 감염성물질이 개별로 3중 안전 포장된 경우, 하나의 포장단위로 재포장함을 의미

- ① 동일한 카테고리의 3중 안전 포장된 감염성물질들을 최종 외곽 포장 용기에 넣은 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고정한다.
- ② 최종 외곽 포장 용기에 해당되는 표식을 부착하고, 표기 내용을 기입한다.
- ③ 최종 외곽 포장 용기에 직접 연락이 가능한 수신·발송자 기입과 24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드라이아이스 중량(무게)를 기재하고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 다수 포장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여러 1차 용기들을 하나의 2차 안전 수송용기 내에 포장함을 의미

- ① 감염성물질은 방수 및 누수방지가 되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 재질의 1차 용기에 넣는다.
- ② 감염성물질이 담긴 1차 용기의 외부는 반드시 적절한 소독제(의료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 ③ 1차 용기를 충분한 양의 흡수제로 둘러 싼 후 내용물이 수송 중 유출되어 섞이지 않도록, 지퍼백(밀봉 가능한 봉지)등으로 개별 포장한다.
- ④ 개별 포장된 1차 용기들을 마개 부위가 위쪽을 향하도록 2차 안전 수송용기에 넣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 후 방수 및 누수방지를 위해 O-링이 포함된 스크류 캡 등 견고한 마개로 닫는다.
- ⑤ 3차 포장 용기 안에 수송 중 외부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에어비닐등 충격완화제를 넣고, 2차 안전 수송용기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 ⑥ 시험의뢰서 등 감염성물질 정보는 2차 안전 수송용기와 3차 포장 용기 사이에 넣는다. 필요할 경우 감염성물질의 내용 및 용량을 2차 안전 수송용기 표면에 부착한다.
- ⑦ 3차 포장 용기(외곽 포장 용기)는 각 단면이 최소 10cm 이상이어야 한다.
- ⑧ 최종 외곽 포장 용기에 직접 연락이 가능한 수신·발송자 기입과 24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드라이아이스 중량(무게)를 기재하고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6) 법정감염병 원인병원체 및 병원체 의심 검체 카테고리 분류

법정 감염병 구분	감염병명	병원체명	카테고리 분류		위험군 분류
			병원체	검체	
제1급 감염병 (18종)	에볼라바이러스병	Ebola virus	A	A	4
	마버그열	Marbug virus	A	A	4
	라싸열	Lassa virus	A	A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virus	A	A	4
	남아메리카출혈열	South American hemorrhagic fever virus			
	- 아르헨티나출혈열	Junin virus	A	A	4
	- 볼리비아출혈열	Machupo virus	A	A	4
	- 베네수엘라출혈열	Guanarito virus	A	A	4
	- 브라질출혈열	Sabiá virus	A	A	4
	리프트밸리열	Rift Valley fever virus	A	B	3
	두창	Variola virus	A	A	4
	페스트	<i>Yersinia pestis</i>	A	B	3
	탄저	<i>Bacillus anthracis</i>	A	B	3
	보툴리눔독소증	클로스트리디움속균 (<i>Clostridium botulinum</i> , <i>C. butyricum</i> , <i>C. baratii</i> 등)	A	B	2
	야토병	<i>Francisella tularensis</i>	A	B	3
	신종감염병증후군	-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ARS-CoV	A	B	3
	중등호흡기증후군(MERS)	MERS-CoV	A	B	3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nimal influenza virus	A	B	3
	신종인플루엔자	Influenza virus	A	B	3
	디프테리아	<i>Corynebacterium diphtheria</i>	B	B	2
	니파바이러스감염증	Nipah virus	A	A	4

법정 감염병 구분	감염병명	병원체명	카테고리 분류		위험군 분류
			병원체	검체	
제2급 감염병	결핵	<i>Mycobacterium tuberculosis</i> , <i>M. bovis</i> (BCG 제외), <i>M. africanum</i> , <i>M. canetti</i> , <i>M. microti</i> , <i>M. pinnipedii</i> , <i>M. mungi</i>	A	B	3
	수두	Human alphaherpesvirus 3	B	B	2
	홍역	Measles morbillivirus	B	B	2
	콜레라	<i>Vibrio cholerae</i> O1· O139	A	B	2
	장티푸스	<i>Salmonella</i> Typhi	B	B	2
	파라티푸스	<i>Salmonella</i> paratyphi A, B, C	B	B	2
	세균성이질	<i>Shigella dysenteriae</i> Type1	A	B	2
		<i>Shigella dysenteriae</i> (Type1제외)	B	B	2
		<i>Shigella boydii</i>	B	B	2
		<i>Shigella flexneri</i>	B	B	2
		<i>Shigella sonnei</i>	B	B	2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Enterohemorrhagic <i>Escherichia coli</i>	B	B	2
	A형간염	Hepatitis virus A	B	B	2
	백일해	<i>Bordetella pertussis</i>	B	B	2
	유행성이하선염	Mumps orthorubulavirus	B	B	2
	풍진	Rubivirus rubellae	B	B	2
	폴리오	Polio virus	B	B	2
	수막구균 감염증	<i>Neisseria meningitidis</i>	B	B	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i>Haemophilus influenzae</i> type b	B	B	2
	폐렴구균 감염증	<i>Streptococcus pneumoniae</i>	B	B	2
	한센병	<i>Mycobacterium leprae</i>	B	B	2
	성홍열	<i>Streptococcus pyogenes</i>	B	B	2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Vancomycin-intermediate <i>Staphylococcus aureus</i> , Vancomycin-resistant <i>Staphylococcus aureus</i>	B	B	2

법정 감염병 구분	감염병명	병원체명	카테고리 분류		위험군 분류
			병원체	검체	
제3급 감염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Carbapenem-Resistant <i>Enterobacterales</i>	B	B	2
	E형간염	Paslahepevirus balayani	B	B	2
	파상풍	<i>Clostridium tetani</i>	B	B	2
	B형간염	Hepatitis B virus, HBV	B	B	2
	일본뇌염	Japanese encephalitis virus	B	B	2
	C형간염	Hepacivirus hominis	B	B	2
	말라리아	<i>Plasmodium vivax</i>	B	B	2
		<i>Plasmodium ovale</i>	B	B	2
		<i>Plasmodium malariae</i>	B	B	2
		<i>Plasmodium falciparum</i>	B	B	2
		<i>Plasmodium knowlesi</i>	B	B	2
	레지오넬라증	<i>Legionella</i> species	B	B	2
	비브리오패혈증	<i>Vibrio vulnificus</i>	B	B	2
	발진티푸스	<i>Rickettsia prowazekii</i>	A	B	3
	발진열	<i>Rickettsia typhi</i>	A	B	3
	쯔쯔가무시증	<i>Orientia tsutsugamushi</i>	A	B	3
	렙토스피라증	<i>Leptospira interrogans</i> 등	B	B	2
	브루셀라증	<i>Brucella melitensis</i>	A	B	3
		<i>Brucella suis</i>	A	B	3
		<i>Brucella abortus</i>	A	B	3
		<i>Brucella canis</i>	A	B	3
		<i>Brucella ceti</i>	A	B	3
		<i>Brucella pinnipediae</i>	A	B	3
	공수병	Lyssavirus rabies	A	B	3
	신증후군출혈열	<i>Orthohantavirus hantanense</i>	A	B	3
		<i>Orthohantavirus seoulense</i>	A	B	3
	후천성면역결핍증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A	B	3

법정 감염병 구분	감염병명	병원체명	카테고리 분류		위험군 분류
			병원체	검체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Creutzfeldt Jacob Disease prion	A	A	3
		variant Creutzfeldt Jacob Disease prion	A	A	3
	황열	Yellow fever virus	A	B	3
	덴기열	Dengue virus	B	B	2
	큐열	<i>Coxiella burnetii</i>	A	B	3
	웨스트나일열	West Nile virus	A	B	3
	라임병	<i>Borrelia burgdorferi</i>	B	B	2
		<i>Borrelia afzelii</i>	B	B	2
		<i>Borrelia garinii</i>	B	B	2
	진드기매개뇌염	Central Europe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A	B	3
		Far Easter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A	B	3
		Siberi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A	B	3
	유비저	<i>Burkholderia pseudomallei</i>	A	B	3
	치쿤구니아열	Chikungunya virus	A	B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Dabie bandavirus	A	B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Zika virus	B	B	2
	엠pok스	Monkeypox virus	A	B	3
	매독	<i>Treponema pallidum</i>	B	B	2
제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Influenza virus A, B, C (Orthomyxoviridae)	B	B	2
	회충증	<i>Ascaris lumbricoides</i>	B	B	2
	편충증	<i>Trichuris trichiura</i>	B	B	2
	요충증	<i>Enterobius vermicularis</i>	B	B	2
	간흡충증	<i>Clonorchis sinensis</i>	B	B	2
	폐흡충증	<i>Paragonimus westermani</i>	B	B	2
	장흡충증	<i>Metagonimus yokogawai</i> 등	B	B	2

법정 감염병 구분	감염병명	병원체명	카테고리 분류		위험군 분류
			병원체	검체	
	수족구병	Enterovirus	B	B	2
	임질	<i>Neisseria gonorrhoeae</i>	B	B	2
	클라미디아감염증	<i>Chlamydia trachomatis</i>	B	B	2
	연성하감	<i>Haemophilus ducreyi</i>	B	B	2
	성기단순포진	Simplexvirus humanalpha1 Simplexvirus humanalpha2	B	B	2
	침균콘딜롬	Human papillomavirus	B	B	2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B	B	2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Methicillin-resistant <i>Staphylococcus aureus</i>	B	B	2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Multidrug-Resistant <i>Pseudomonas aeruginosa</i>	B	B	2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Multidrug-Resistant <i>Acinetobacter baumannii</i>	B	B	2
장 관 감 염 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Non-typhoidal <i>Salmonella</i>	B	B	2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i>Vibrio parahaemolyticus</i>	B	B	2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Enterotoxigenic <i>Escherichia coli</i>	B	B	2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EIEC)	Enteroinvasive <i>Escherichia coli</i>	B	B	2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Enteropathogenic <i>Escherichia coli</i>	B	B	2
	캠필로박터균 감염증	<i>Campylobacter jejuni</i>	B	B	2
		<i>Campylobacter coli</i>	B	B	2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i>Clostridium perfringens</i>	B	B	2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i>Staphylococcus aureus</i>	B	B	2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i>Bacillus cereus</i>	B	B	2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i>Yersinia enterocolitica</i>	B	B	2

법정 감염병 구분	감염병명	병원체명	카테고리 분류		위험군 분류
			병원체	검체	
급성 호흡기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i>Listeria monocytogenes</i>	B	B	2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otavirus A	B	B	2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Astrovirus	B	B	2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Human mastadenovirus F	B	B	2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Norovirus	B	B	2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Sapovirus	B	B	2
	이질아메바 감염증	<i>Entamoeba histolytica</i>	B	B	2
	람블편모충 감염증	<i>Giardia lamblia</i>	B	B	2
		<i>Giardia duodenalis</i>	B	B	2
		<i>Giardia intestinalis</i>	B	B	2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i>Cryptosporidium parvum</i>	B	B	2
		<i>Cryptosporidium hominis</i>	B	B	2
	원포자충 감염증	<i>Cyclospora cayetanensis</i>	B	B	2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adenovirus	B	B	2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human bocavirus	B	B	2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parainfluenzavirus	B	B	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respiratory syncytial virus	B	B	2
	라이노바이러스 감염증	human rhinovirus	B	B	2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human metapneumovirus	B	B	2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human coronavirus	B	B	2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증	<i>Mycoplasma pneumoniae</i>	B	B	2
	클라미디아균 감염증	<i>Chlamydia pneumoniae</i>	B	B	2

법정 감염병 구분	감염병명	병원체명	카테고리 분류		위험군 분류
			병원체	검체	
해 외 유 입 기 생 충 감 염 증	리슈만편모충증	<i>Leishmania</i> spp.	B	B	2
	바베스열원충증	<i>Babesia</i> spp.	B	B	2
	아프리카수면병	<i>Typanosoma brucei gambiense</i>	B	B	2
		<i>Trypanosoma brucei rhodesiense</i>	B	B	2
	주혈흡충증	<i>Schistosoma japonicum</i>	B	B	2
		<i>Schistosoma mansoni</i>	B	B	2
		<i>Schistosoma haematobium</i>	B	B	2
		<i>Schistosoma intercalatum</i>	B	B	2
		<i>Schistosoma mekongi</i>	B	B	2
	샤가스병	<i>Trypanosoma cruzi</i>	B	B	2
	광동주혈선충증	<i>Angiostrongylus cantonensis</i>	B	B	2
	악구충증	<i>Gnathostoma spinigerum</i>	B	B	2
		<i>Gnathostoma hispidum</i>	B	B	2
		<i>Gnathostoma nipponicum</i>	B	B	2
		<i>Gnathostoma doloresi</i>	B	B	2
	사상충증	<i>Wuchereria bancrofti</i>	B	B	2
		<i>Brugia malayi</i>	B	B	2
		<i>Brugia timori</i>	B	B	2
		<i>Oncocerca volvulus</i>	B	B	2
		<i>Loa loa</i>	B	B	2
		<i>Dirofilaria immitis</i>	B	B	2
		<i>Dirofilaria repens</i>	B	B	2
		<i>Masonella perstance</i>	B	B	2
		<i>Masonella azzardi</i>	B	B	2

법정 감염병 구분	감염병명	병원체명	카테고리 분류		위험군 분류
			병원체	검체	
	포충증	<i>Echinococcus granulosus</i>	B	B	2
		<i>Echinococcus multilocularis</i>	B	B	2
	톡소포자충증	<i>Toxoplasma gondii</i>	B	B	2
	메디나선충증	<i>Dracunculus medinensis</i>	B	B	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Enterovirus	B	B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uman papillomavirus	B	B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SARS - CoV-2	A	B	3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i>Candida auris</i>	B	B	2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별책]



질병관리청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T. 043-719-7845, 7848

F. 043-719-7841, 8101



ISBN 979-11-6860-752-1 (PDF)
ISBN 979-11-6860-750-7 (세트)

